
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안내

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법규 (이하 “금융소비자보호법령”)에 따라 당사의 「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」 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
- 아 래 -

1. 제정일자 : 2021년 9월 24일

2. 주요사항

- 1) 근거법령 :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16 조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10 조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 제 9 조
- 2) 제정이유 :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
- 3)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: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등
- 4) 적용대상 :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적용됨

3. 주요내용

- 1)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
- 2)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
- 3)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
- 4)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·조치 및 평가
- 5)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
- 6)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
- 7)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및 위임